

심 사 보 고 서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2
----------	-----

2019. 12. 16.(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11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

-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석영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임대 운용 중인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체에 매각하여 충북도 내 기업의 장기적 투자 및 근로자 정착을 도모하려는 안건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 괴산대제산단 내 토지 매각

- 위치 :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889번지(괴산대제산단 내)
- 사업기간 : 2019. 12. ~ 2020. 2.
- 매각규모 : 13,934.2㎡
- 매각금액 : 1,675백만원 정도(감정평가액)
- 매각방식 : 일반경쟁입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곽영학)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임대 운용 중인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체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 현재 산업시설용지는 2019년 9월 (주)엠티에이에 임대를 하였으며, (주)엠티아이 측의 임대부지 매입 요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및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매각이 불가하여 일반경쟁방식으로 매각을 하려는 것임.
- 현재 임대 운영중인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여 입주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및 근로자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332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11월 28일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332 호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2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장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괴산 대제산업단지 내 임대 운용 중인 산업시설용지를 기업체에 매각하여 충북도 내 기업의 장기적 투자 및 근로자 정착을 도모하려는 안건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7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괴산대제산업단지 내 토지 매각》

- 위 치 :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889번지(괴산대제산업단지 내)
- 사업기간 : 2019. 12. ~ 2020. 2.
- 매각규모 : 13,934.2m²
- 매각금액 : 1,675백만원 정도(감정평가액)
- 매각방식 : 일반경쟁입찰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